

##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

# 확인조사결과보고및건의(안)

의안 번호	13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92. 10. 15

발 의 자 : 건설위원장

### 1. 주문

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 현지확인 조사결과문제점에 대한 대책등을  
지사에 건의하여 시정 토득 촉구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하천법 제11조 및 제12조의제1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남대천(준용  
하천) 비관리청하천공사 추진에 따른 민원이 있어 본 공사의 추진 상황등을  
현지 확인 조사한바, 문제점에 대한 대책등을 지사에게 건의하여 시정조치  
토득 하고자함.

### 3. 참고사항

- 하천법 (제 11, 12, 23조)

남대천비관리청하천공사에 따른  
확인조사 결과보고 및 건의 (안)

건 설 위 원 회

# 목 차

1. 현 황	-----	1 ~ 2
2. 공사의 추진경위	-----	2 ~ 4
3. 주요 문제점	-----	5
4. 건의사항	-----	6

# 남대천 비관리청 하천공사에 따른 확인조사결과보고및건의(안)

## 1. 현 황

- 위치 :
  - ┌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경리 1398 번지선
  - └ 충북 영동군 용화면 용화리 1059 번지선
- 하천명 : 준용하천 남대천 (충북 영동군과 전북 무주군의 경계하천)
- 사업개요 : 제방 1,320 M 호안 1,320 M (돌붙임) 구조물 (흡관) 1개소
  - ※ 충북공사물량 : 제방 L = 630 M 호안 L = 630 M
    - 당초 협의 물량 : 제방 L = 440 M 호안 L = 440 M
    - 협의 요구량 : 제방 L = 100 M 호안 L = 100 M
    - 조건 요구량 : 제방 L = 340 M 호안 L = 340 M (남대천교 상류 180m 용화천 좌안제 160m 추가)
    - 미 협의 시공물량 : 190m (남대천 상류 80m, 용화천 좌안제 110m)
- 허가자 : 무주군수
- 피허가자 :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26 - 5 (주)전중 대표 서병도
- 사업비 : 401,000 千원 (변경 460,000 千원)
  - ※ - 당초 인가된 사업비로 폐천부지 양여 조건으로 인가
  - 충북구간 사업비 : 132,000 千원 (변경 물량 사업비 : 189,000 千원)
- 사업기간 : '92. 4. 1 ~ 7. 29 (당초 '92. 4. 1 ~ 6. 30)
- 제방부지 (제외지 포함) 편입면적 : 20,288 m<sup>2</sup> (6,137평)
  - 제방부지 : 1,581 m<sup>2</sup> (478 평)
  - 제 외 지 : 18,707 m<sup>2</sup> (5,659 평)

- 폐천부지 면적 : 17,660 m<sup>2</sup> (5,342평) → 분할측량결과
- 폐천부지 양여 계획 (충북)
  - 사업비 : 132,000 천원 (협의 물량 사업비)
  - 폐천부지 면적 : 17,660 m<sup>2</sup> (5,342평)
  - ※ 폐천부지 예상가격 평당 20,000원
  - 5,342 평 × 20,000 원 = 106,840 천원 (25,160천원 부족).

## 2. 공사의 추진경위

### 가. 협의과정

- 허가신청 : '91. 5. 22 (주)전중서병도 → 무주군수
- 시행인가신청 : '91. 5. 27 무주군수 → 전라북도지사
  - 제방 L = 801M (충북 100M 포함)
  - 돌붙임 (전북), 석축 (충북, 전북 일부)
- 보완지시 : '91. 6. 3 전북지사 → 무주군수
  - 기술용역회사로 하여금 설계
  - 경계하천임으로 충북지사의 협의
- 보관요구 : '91. 6. 8 무주군수 → 서병도
- 촉구 : '91. 6. 21 무주군수 → 서병도
- 경계하천 협의요청 : '91. 7. 5 무주군수 → 전북지사
- 협의요청회신 : '91. 7. 16 전북지사 → 무주군수
- 경계하천공사협의 : '91. 7. 23 (본도접수 7. 24) 무주군수 → 충북지사  
충북구간 100m
- 현지조사 : '91. 7. 25 (복명 7. 26)
  - 복명내용 : 비관리청의 공사계획에서 제외시킨 남대천교 상류 우안제 180m 와 용화천 좌안제 160m (충북지역) 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추가하여 주시고 우리도 관내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한하여는 우리도 관내의 폐천부지 면적과 상계, 잔여면적 국유 존치

- 하천공사협의요청 : '91. 7. 27 전북지사 → 충북지사
- 협의회신 : '91. 7. 29 충북지사 → 전북지사
  - 7. 26 현지 복명서를 토대로 조건의 부하여 협의
  - 조건 : 현지 복명내용과 동일

#### 나. 인가과정

- 인가신청 : '91. 8. 8. 전북지사 → 이리지방국토관리청
- 인가신청서 보완요구 : '91. 8. 20 이리지방국토관리청 → 전북지사
- 1차 보완지시 : '91. 8. 24 전북지사 → 무주군수
- 보완요구 : '91. 8. 26 무주군수 → 서병도
- 보완서류제출 : '91. 9. 16 서병도 → 무주군수
- 보완서류제출 : '91. 9. 28 무주군수 → 전북지사
  - 내용 : 충북도 협의사항 물량 440m도 포함하고 미협의 물량 190m (남대천 80m, 용화천 110m)도 포함하여 신청  
→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설계
- 2차 보완지시 : '91. 10. 8 전북지사 → 무주군수
- 보완제출 : '91. 10. 22 무주군수 → 전북지사
  - 내용 : 돌붙임을 호안브럭으로 변경, 취입보 연장설계
- 보완지시 : '91. 11. 28 이리지방국토관리청 → 전북지사
- 비관리청 공사인가 : '91. 1. 14 ※ 이리지방 국토관리청
  - 물량 : 축제공 1,320 M, 호안공 1,320 M, 호안공 호안브럭 6,168㎡  
돌망태 2,850 m<sup>2</sup>, 석축 1,466 m<sup>2</sup>, 구조물 흙관 1개소
  - 사업비 : 401,000천원

#### 다. 허가과정

- 하천공사 시행허가 : '92. 2. 10 (충북 접수 2. 13) 무주군수
  - 물량 : 허가물량 축제공 : 1,320 M, 호안공 : 1,320M, 구조물공 1개소
  - 목적 : 농경지와 인가보호 홍수피해의 절감과 식량 증대

- 허가사항 공고 : '92. 2. 12 무주군수 → 군 게시공고 (하천법시행령 제15조2항)
- 실시계획인가 신청 : '92. 3. 30 서병도 → 무주군수
- 실시계획인가 : '92. 4. 1 (충북접수 4. 3) 무주군수  
- 기간 : 4. 1 ~ 6. 29

라. 변경과정

-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 : '92. 5. 29 서병도 → 무주군수
- 변경인가 : '92. 6. 1 (충북접수 '92. 8. 26) 무주군수  
- 내용 : · 축제공 1,303 M (당초 1,320M)  
          \* 전북지역 물량변경 17M  
          · 호안공 : 당초 호안브릭 → 돌붙임 (깬돌)  
          · 사업비 : 460,000천원 (당초 401,000천원)  
          \* 당초 인가된 호안브릭 사업비로 폐천부지 양여조건 인가

마. 준공과정

- 준공기간 연장허가 신청 : '92. 6. 22 서병도 → 무주군수  
- 사유 : 현지주민들의 요구사항(제방기초보강, 하상정리, 수재공 제방폭 확대등) 이행
- 연장허가신청 보완 : '92. 6. 25 무주군수 → 서 병 도  
- 내용 : 기성공정, 잔여공사 물량, 공사비 및 연장공기를 명확히 한 용역회사 작성의 설계도서 첨부)
- 신청서 보완제출 : '92. 6. 29 서병도 → 무주군수
- 준공기간 연장허가 : '92. 6. 29 무주군수  
- 내용 : · 당초허가 기간 : '92. 4. 1 → '92. 6. 29 (90일간)  
          · 연장허가 기간 : '92. 6. 20 → '92. 7. 29 (30일간)
- 준 공 : '92. 7. 29
- 준공검사 신청 : '92. 8. 31 서병도 → 무주군수

- 준공검사 연기통보 : '92. 9. 8 무주군수 → 서병도
- 내용 : 전라북도 도의회 소위원회 협의후 추후 통지

### 3. 주요문제점

가. 권한외의 기관협조에 의한 출장확인 및 사업의 시공 협의시 불충분한 검토 협의

- 경계하천의 하천공사는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도지사와 인접 도지사  
의 협의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주군수로부터 요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 
출장하고 추후 전북지사의 협의 요청을 받아 충분하 시일을 두고 검토함이 없이  
단시일내에 협의

나. 충북지역 190 M 에 대한 미협의 시공

- 남대천 총연장 1,320 M ( 본도 630 M , 전북 690 M )
- 본도 협의분 440 M를 제외한 190 M 미협의 시공

다. 전라북도 무주군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리

- 피허가자 서 병도의 허가 신청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의 인가신청 보완지시시 본  
공사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도록 설계 변경하고도 본도지사와 협의하지 않은점
- 협의요청시 설계도면의 미첨부 (법적 규제사항 없음)
- 기타 인가자의 수차례 서류보완등으로 인한 처리내용 본도에 미통보
- 설계변경 허가를 하면서 선후가 맞지 않는 처리를 한점  
'92. 5. 29 신청 → '92. 6. 1 즉결처리 → 6.29 설계변경 의견서 서병도로부터  
징구 → 6. 29 무주군 토목기원 배영기의 설계변경 타당성 복명

라. 공사비에 대한 폐천부지 상계처리

- 본 공사비를 추후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 폐천부지를 도유재산으로 확보할 수  
있는 방안등을 연구검토를 하지 않은 사업 시행



## 4. 건의사항 (안)

가. 권한외의 기관협조에 의한 출장 및 사업의 협의시 불충분한 검토협의를 대한 조사 처리

- 외부에 의한 청탁등이 있었는지 지사의 철저한 조사처리 요구

나. 충북지역 190 M 에 대한 미협의 시공원인 규명 및 대책건의

- 관계공무원의 확인 감독 소홀 규명 및 무주군수의 법규에 명시된 법률위반의 명백한 하자인 추가시공부분 190M 공사구간의 공사비는 폐천부지의 상계처리나 공사비 지급 불가를 명백히 밝히고 지사로 하여금 이행토록 촉구 건의

다. 전라북도 무주군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처리

- 본도의회외의 권한외의 사항이나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본도의회외장 명의로 통보 하여 처리

라. 공사비에 대한 폐천부지 상계처리 검토 및 재고

- 폐천부지를 공사대금과 상계하지 말고 추후예산에 계상지급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
  - 수용자와 협의하여 대금으로 정산함을 수용토록 면밀한 검토
  - 시공구간내의 기성제의 설계상 반영 여부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제방높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비 정산을 명확하게 할 것.
  - 1992년도 하천부지 점용자 점용허가의 조속한 취소

첨 부 : 관련법규 (하천법)

# 관 련 법 규

## ( 하 천 법 )

제 11 조 (관리청) 하천은 건설부 장관이 관리 한다. 다만, 대통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 도지사가 관할한다.

제 12 조 (경계하천의관리) ①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리 하는 하천 (이하 "지방하천"이라 한다.) 으로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하천은 관계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23 조 (비관리청의 공사시행) ① 관리청이 아닌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 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.